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출번호 : AA04265-0000000016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L-75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고 용도 : 2. 접착제 및 실런트, 8. 코팅, 페인트, 신너, 페인트 제거제, 8.5. 경화제, 8.6 기타 코팅 및 도장 관련 제품, 17. 잉크 및 토너
(상세 용도 : 목공, 금속, 합성피혁, 접착제, 코팅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5> 용도분류체계 및 화평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용도 기재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권고 용도 외에 사용하지 마시오.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 제조자 정보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46-47(월하동) (우 59611)
 - 긴급연락처 : 061-688-4800
 - 담당부서 : TDI 생산팀
-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우 04541)
 - 긴급연락처 : 02-729-2700
 - 담당부서 : FM 영업팀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 인화성 액체 : 구분 2
- 급성독성(흡입 : 증기) : 구분 4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 2
- 피부 과민성 : 구분 1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 3 (마취 영향)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유해·위험 문구 :
 -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H332 흡입하면 유해함
 -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예방·조치 문구 :
 - 예방 :
 -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금연
 -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
 -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십시오.
 - P241 방폭형 [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십시오.
 -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십시오.
 -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십시오.
 -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십시오.
 - 대응 :
 -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십시오.
 -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십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십시오[또는 샤워하십시오].
 -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십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십시오.
 -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P321 응급처치를 하십시오.
 - P333+P313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십시오.
 -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십시오.
 - P362+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십시오.
 - 저장 :
 - P403+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 폐기 :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분진폭발위험성)

-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대체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함유량(%)	등록 또는 신고번호
1,3-다이아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및 2,2'-옥시비스[에탄올]과 2-에틸-2-(하이드록시메틸)-1,3-프로판다이올 중합체	1,3-다이아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및 2,2'-옥시비스[에탄올]과 1,3-프로판다이올, 2-에틸-2-(하이드록시메틸)- 중합체	53317-61-6	74.7~75.1	-
에틸 아세테이트	아세트산 에틸; 아세트산 에틸 에스터;	141-78-6	24.8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메틸-m-페닐렌다이소시아네이트;	26471-62-5	0.1~0.5	제 04-1808-00760 호 (화평법 등록번호)

※ 상기 항목에 작성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함유량이 한계농도 이하임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들어가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십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십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과량의 먼지 또는 흙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십시오.

라. 먹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십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알코올 포말, 이산화탄소, 물분무
- 질식소화 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십시오.
- 대부분 물보다 가벼움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뜨거운 상태로 운반될 수 있음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음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십시오.
- 탱크 화재 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십시오.
- 탱크 화재 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십시오.
- 탱크 화재 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십시오.
- 탱크 화재 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십시오.
- 탱크 화재 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십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
- 옆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향의 예방조치를 따르십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십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십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십시오.
-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십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옆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십시오.
-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십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십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십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십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십시오.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십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십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십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경고표시 예방조치를 따르십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십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십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십시오.
- 열에 주의하십시오.
- 저지대, 닫힌 공간 및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전 공기농도 측정 및 환기 필요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 - 금연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1,3-다이아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및 2,2'-옥시비스[에탄올]과 2-에틸-2-(하이드록시메틸)-1,3-프로판다이올 중합체>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 규정 : 자료없음
 - OSHA 규정 : 자료없음
 - NIOSH 규정 : 자료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 EU 규정 : 자료없음
- 기타 : 자료없음

<에틸 아세테이트>

- 국내규정 : TWA 400 ppm
- ACGIH 규정 : TWA 400 ppm
- OSHA 규정 : TWA 400 ppm (1,400 mg/m³) (Final PELs) (Vacated PELs),
- NIOSH 규정 : TWA 400 ppm (1,400 mg/m³)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 EU 규정 : TWA 200 ppm (734 mg/m³), STEL 400 ppm (1,468 mg/m³)
- 기타 :
 - 호주 : TWA 200 ppm (720 mg/m³), STEL 400 ppm (1,440 mg/m³)
 - 중국 : TWA 200 mg/m³, STEL 300 mg/m³
 - 덴마크 : TWA 150 ppm (540 mg/m³)

<톨루엔 다이아아소시아네이트>

- 국내규정 : TWA 0.005 ppm, STEL 0.02 ppm (2,4 - TDI, 2,6 - TDI)
- ACGIH규정 : TWA 0.001 ppm (흡입성 분울 및 증기), STEL 0.005 ppm (흡입성 분울 및 증기)
- OSHA 규정 : 자료없음
- NIOSH 규정 : 자료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작업 종료 시 채취한 소변 중 농도 : 5 µg/g 크레아티닌 : 가수분해된 톨루엔디아민 이성질체 (비특이적)
- EU 규정 : 자료없음
- 기타 :
 - 벨기에 : TWA 0.005 ppm (0.037 mg/m³), STEL 0.02 ppm (0.14 mg/m³)
 - 콜롬비아 : TWA 0.001 ppm (흡입성 분울 및 증기), STEL 0.005 ppm (흡입성 분울 및 증기)
 - 일본 : Ceiling 0.02 ppm (0.14 mg/m³) (톨루엔 디아소시아네이트로 등재),
OEL 0.005 ppm (0.035 mg/m³) (톨루엔 디아소시아네이트로 등재)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사용 운전시 먼지, 흠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사용하십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십시오.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 노출되는 액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 격리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 격리식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통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 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 눈 보호 :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십시오.
- 손 보호 :
 -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신체 보호 :
 -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십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성상 : 액체
- 색상 : 옅은 노랑색

나. 냄새 : 자료없음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16 °C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75 °C

사. 인화점 : 5 °C

아. 증발 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없음

카. 증기압 : 228 mbar (50 °C)

타. 용해도 : 6.694×10^{-7} mg/L (25 °C)

파. 증기밀도 : 1.17 g/mL (20 °C)

하. 비중 :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log K_{ow}=9.38$

너. 자연발화 온도 : > 500 °C (DIN 51794)

더. 분해 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약 2,000 mPas (25 °C)

머. 분자량 : 자료없음

버. 입자크기(고분자화합물) : 자료없음

서. 자기가속분해온도(고분자화합물)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화재 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다.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
- 부식성/독성 흡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제품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물질의 특성 및 사용 공정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는 [흡입], [피부] 및 [눈]으로 예상된다.

[흡입] : 흡입하면 유해하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 피부 과민성 물질로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눈]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독성

경구 분류되지 않음 (ATE_{mix} = 9,912 mg/kg bw)

- 에틸 아세테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D₅₀ (랫드) = 5,620 mg/kg bw (ECHA, 1) <p>-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구분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D₅₀ (랫드, 암) = 4,130 mg/kg bw (OECD TG 401) (화평법 등록서류)
경피	<p>분류되지 않음 (ATE_{mix} > 19,564 mg/kg bw)</p> <p>- 에틸 아세테이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D₅₀ (토끼, 수) > 20,000 mg/kg bw (ECHA, 1) <p>-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D₅₀ (토끼) > 9,400 mg/kg bw, 사망없음 (OECD TG 402) (화평법 등록서류)
	<p>구분 4 (ATE_{mix} = 12.14 mg/L air)</p> <p>- 에틸 아세테이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L₀ (랫드, 암/수) > 22.5 mg/L (증기, 6hr) (GLP) (ECHA, 1) <p>-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구분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₅₀ (랫드) = 0.24 mg/L (증기, 4hr) (OECD TG 403) (화평법 등록서류) • 유독물질 지정고시 : 구분 2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p>분류되지 않음</p> <p>- 에틸 아세테이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 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중정도의 약한 자극성을 나타내었고 해당 자극은 7일 이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 (홍반지수: 1.33, 부종지수: 0.4) (OECD TG 404) (ECHA, 1) <p>-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구분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 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 유발 (화평법 등록서류) • 유독물질 지정고시 : 구분 2
	<p>구분 2</p> <p>- 에틸 아세테이트 : 구분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끼를 대상으로 심한 눈손상성/자극성 시험결과, 7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됨. 자극성 없음(각막 불투명도: 0.5, 홍채지수: 0.17, 결막지수: 1.33, 결막부종지수: 0.67) (OECD TG 405) (ECHA, 1) • 유독물질 지정고시 : 구분 2 <p>-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구분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끼를 대상으로 심한 눈손상성/자극성 시험결과, 씻어내지 않았을 때 30일 안에 회복되지 않는 각막자극, 8-19일 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가역적 자극 관찰됨 (각막지수=0.66/4, 홍채지수=0.33/2, 결막지수=3/3, 결막부종지수=4/4) (화평법 등록서류) • 유독물질 지정고시 : 구분 2
○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p>분류되지 않음</p> <p>-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구분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당한 피부 노출은 호흡기 노출을 수반할
	<p>분류되지 않음</p> <p>-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구분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당한 피부 노출은 호흡기 노출을 수반할

	<p>가능성이 있어 피부 접촉에 의해 호흡기과민성이 유발될 수 있음 (ECHA,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질 지정고시 : 구분 1
<p>○ 피부과민성</p>	<p>구분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 아세테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니피그(암)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과민성을 나타내지 않음 (OECD TG 406) (ECHA, 1)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구분 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우스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과민성 유발 (EC₃: 0.02% w/v) (OECD TG 429) (화평법 등록서류) • 유독물질 지정고시 : 구분 1
<p>○ 발암성</p>	<p>분류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다이아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및 2,2'-옥시비스[에탄올]과 2-에틸-2-(하이드록시메틸)-1,3-프로판다이올 중합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고시, IARC, NTP, OSHA, ACGIH, EU CLP 1272/2008에 등재되지 않음 - 에틸 아세테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고시, IARC, NTP, OSHA, ACGIH, EU CLP 1272/2008에 등재되지 않음 • 마우스(암/수)를 대상으로 8주간 복강 내 투여결과, 폐 종양을 증가시키지 않음 (ECHA, 1)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구분 2 (흡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고시 : 구분 2 • IARC : 2B (인체 발암 추정 물질) • EU CLP 1272/2008 : 구분 2 • ACGIH : A3 (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p>○ 생식세포 변이원성</p>	<p>분류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 아세테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 (OECD TG 471) (ECHA, 1) •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 (OECD TG 473) (ECHA, 1) • 시험관 내 박테리아 DNA 손상 또는 회복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 (EPA OPPTS 870.5500) (ECHA, 1) •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결과, 음성 (OECD TG 474) (ECHA, 1)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없음

	<p>시 음성, 대사활성계 존재 시 양성 (OECD TG 471) (화평법 등록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결과, 음성 (OECD TG 474, GLP) (화평법 등록서류) • 생체 내 부정기 DNA 합성시험결과, 음성 (GLP) (화평법 등록서류) * 복귀돌연변이 시험의 경우 매개물(vehicle)에 따라 가수분해 반응생성물 TDA에 의해 음성, 양성 결과가 양립하고,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시험결과 음성임. 참고로 등록물질은 물과 빠르게 반응하여 가수분해되고 반응생성물로서 TDA를 형성하므로 In vitro 시험 수행이 불가능함
<p>○ 생식독성</p>	<p>분류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 아세테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우스(암/수)를 대상으로 2세대 생식독성시험결과, 최대 15%의 시험 농도 (20.7 g/kg/day에 해당)는 생식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유사물질 : 에탄올) (OECD TG 416) (ECHA, 1) • 랫드를 대상으로 10,000, 16,000, 20,000 ppm의 농도로 발달독성 시험결과, 에탄올 노출로 인해 기형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나 최고 농도에서 비정상적인 변화의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그러나 이 농도에서 명백한 모체독성이 있었음 (유사물질 : 에탄올) (OECD TG 414) (ECHA, 1)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랫드를 대상으로 흡입 발달독성시험결과, 모든 시험군에서 배아 독성이나 최기형성이 관찰되지 않음. 해당물질 증기를 랫드 태자의 기관형성기 상태에 있는 임신한 암컷에 흡입경로로 노출하였을 경우, 가장 높은 농도 0.5 ppm 시험군에서 호흡기 자극이 유발됨. 이 자극에 의한 이차적 반응으로 모체 독성 및 최소 태자독성이 (즉, 음식 섭취량과 체중 감소) 관찰됨 (OECD TG 414) (화평법 등록서류) • 랫드를 이용한 2세대 흡입생식독성시험결과, 부모세대에서 수컷에게 비루(nasal discharge), 암컷에게 붉은 털(red-tinged fur)관찰됨. 비염, 호흡상피의 과형성 및 형성장애 발견되었으며, 과형성(hyperplasia) 빈도가 증가함. 2개 고농도군에게 후두 및 숨구멍 조직의 림프구 침투(submucosal lymphoid infiltrates) 발병률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세포 내 호산과립 발생빈도가 증가됨 (NOAEC(P)=0.08 ppm, NOAEC(F1)=0.3 ppm, NOAEC(F2)=0.02 ppm) (OECD TG 416, GLP) (화평법 등록서류)
<p>○ 특정 표적장기 전신독성 (1회 노출)</p>	<p>구분 3 (마취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 아세테이트 : 구분 3 (마취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 mg/L의 농도를 60-65분간 흡입하면 기니피그에게 치명적이었으며, 중추신경계 저하로 인해 사망에 이름. 10시간 동안 흡입 시 간과 신장의 충혈이 추가로 발생함 (ECHA, 1) • 유독물질 지정고시 : 구분 3 (마취 영향)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구분 3 (호흡기 자극) (흡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컷 랫드를 대상으로 3시간 동안 두부노출법(head only) 시험결과, 가장 높은 2개 농도군에서 노출 후 체중증가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한 개체에게서 일시적으로 수포음이 들림 (RD₅₀(decrease of respiratory rate)=2.12ppm) (2,4- and 2,6-TDI mixture (80:20)) (ASTM Method E981-84). 즉, 본 물질은 기도자극이라는 국소적,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화평법 등록서류) • 유독물질 지정고시 : 구분 3 (호흡기 자극)
<p>○ 특정 표적장기 전신독성 (반복 노출)</p>	<p>분류되지 않음</p> <p>- 에틸 아세테이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랫드(암/수)를 대상으로 300, 900, 3,600 mg/kg bw/day의 농도로 90-92일간 아만성 경구투여시험결과, 고농도군에서 타액분비, 불규칙한 호흡, 혼수증상이 관찰됨 (NOAEL=900 mg/kg bw/day (nominal)) (EPA OTS 795.2600, GLP) (ECHA, 1) • 랫드(암/수)를 대상으로 350, 750, 1,500 ppm의 농도로 94일간 아만성 흡입독성시험결과, 호흡기 자극영향 (비강 자극)이 관찰됨 (NOEC(전신독성)=350ppm) (EPA OTS 798.2450, GLP) (ECHA, 1) <p>-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랫드와 마우스에 해당물질(80:20 TDI) 증기를 0, 0.05, 0.15 ppm 농도로 2년 동안 하루 6시간, 주 5일 반복독성 및 발암성을 함께 평가한 연구결과, 두 종 모두 0.15 ppm 시험군에서 첫12주 동안 체중이 감소하긴 했으나, 나머지 시험 기간 동안 더 나빠지지는 않음. 랫드의 경우, 0.15 ppm 수컷 시험군 및 ≥0.05 ppm 암컷 시험군에서 비염이 관찰됨. 여기서 비염은 호흡점막에서 (비강에서 삼출물 여부) 편평상피화생/과증식 및 점막고유판에서 백혈구 침윤과 같은 증세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비강 전반부의 국소 자극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마우스의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암수 모두 ≥0.05 ppm 시험군에서 기관, 후두, 기관지, 폐 및 주로 비갑개에서 눈에 띄는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함. 따라서 해당물질의 증기를 만성 흡입한 랫드와 마우스에 대한 LOAEC=0.05 ppm(0.362 mg/m³)으로 도출됨 (OECD TG 453) (화평법 등록서류)
<p>○ 흡인 유해성</p>	<p>자료없음</p>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p>가. 생태독성</p>	
<p>○ 급성 수생 독성</p>	<p>분류되지 않음 (ATE_{mix} = 235.7 mg/L)</p>
<p>○ 만성 수생 독성</p>	<p>분류되지 않음</p>
	<p>- 에틸 아세테이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 류: 96h-LC₅₀ (<i>Pimephales promelas</i>) = 230 mg/L (유수식, 담수) (US EPA method E03-05) (ECHA, 1) 32d-NOEC(<i>Pimephales promelas</i>) >75.6 mg/L (유수식, 담수) (OECD TG 210) (ECHA, 1) • 갑각류: 24h-EC₅₀ (<i>Daphnia magna</i>) = 2,500 mg/L (지수식, 담수) (DIN 38412 pt 11) (ECHA, 1) 21d-NOEC(<i>Daphnia magna</i>)=2.4 mg/L (반지수식, 담수) (OECD TG 211) (ECHA, 1) • 조 류: 72h-NOErC(<i>Desmodesmus subspicatus</i>) > 100 mg/L (지수식, 담수) (OECD TG 201, GLP) (ECHA, 1)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만성 구분 2 (M계수=0) • 어 류: 96h-LC₅₀(<i>Oncorhynchus mykiss</i>) = 133 mg/L (지수식, 담수) (OECD TG 203) (화평법 등록서류) • 갑각류: 48h-EC₅₀(<i>Daphnia magna</i>)=12.5 mg/L (지수식, 담수) (OECD TG 202) (화평법 등록서류) 21d-NOEC_{reproduction}(<i>Daphnia magna</i>)>=0.5 mg/L (반지수식, 담수) (OECD TG 211) (화평법 등록서류) • 조 류: 96h-ErC₅₀(<i>Chlorella vulgaris</i>)=4,300 mg/L (담수) (OECD TG 201) (화평법 등록서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만성수생독성 : 구분 3
<p>나. 잔류성 및 분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 아세테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수분해 반감기= 7.5일 (pH=9), 2년 (pH=7), 16년 (pH=5) (ECHA, 1) • 20일 후 약 69% 생분해됨; 이분해성 (ECHA, 1)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수분해 반감기 : 약 0.5분 (화평법 등록서류) • 28일 후 0% 생분해됨; 난분해성 (OECD TG 302C) (화평법 등록서류)
<p>다. 생물농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 아세테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g K_{ow} = 0.68 (25°C, pH 7) (EPA OPPTS 830.7560) (ECHA, 1) • BCF = 30 (ECHA, 1)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g K_{ow} = 3.43 (22°C) (OECD TG 117) (화평법 등록서류) • BCF = 130, 180 (각각 환경 중 농도 : 1.8 ug/L, 0.8 ug/L) (OECD TG 305E, GLP) (화평법 등록서류)
<p>라. 토양이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 아세테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_{oc}=18.34 (예측치) (EPISUITE)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_{oc} = 1,760 (예측치) (EPISUITE)
<p>마. PBT 및 vPvB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 아세테이트 : PBT 및 vPvB 물질 아님 (ECHA, 1)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PBT 및 vPvB 물질 아님 (ECHA, 2)

바. 오존층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사.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유기용제는 소각하시오.
(소각능력 및 처리방법이 적정하며, 허가된 업체에 처리하시오.)
- 건조한 용기에 넣어 폐기하고, 다른 폐기물과 함께 혼합하지 마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UN No.) : 1866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수지용액(인화성인 것)
RESIN SOLUTION, flammabl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I, II, III

마. 해양오염물질 :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 시 비상조치 : F-E
- 유출 시 비상조치 : S-E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 에틸 아세테이트 :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물질(측정주기 : 6개월; 에틸 아세테이트),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유해위험물질, 영업비밀인정제외물질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측정주기 : 6개월; 2,4-TDI, 2,6-TDI),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진단주기 : 12개월; 2,4-TDI, 2,6-TDI), 노출기준설정물질,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유해위험물질,

발암성 물질 구분 2(2,4-TDI, 2,6-TDI), 영업비밀인정제외물질,
허용기준이하유지대상유해인자

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1,3-다이아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및 2,2'-옥시비스[에탄올]과 2-에틸-2-(하이드록시메틸)-1,3-프로판다이올 중합체 : 기존화학물질 [KE-13854]
- 에틸 아세테이트 : 기존화학물질 [KE-00047],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81],
유독물질 [97-1-161] (아세트산 에틸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고대비물질 [32] (아세트산 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기존화학물질 [KE-10914],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437],
유독물질 [2010-1-611] (톨루엔다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지정수량 : 200 L)

- 에틸 아세테이트 :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지정수량: 200 L)
-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제4류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지정수량: 2,000 L)

라.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일반폐기물 (폐유기용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3-다이아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및 2,2'-옥시비스[에탄올]과 2-에틸-2-(하이드록시메틸)-1,3-프로판다이올 중합체>

-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
 - EC 1272/2008(CLP) 확정 분류 결과 : 해당없음
 - EC 1272/2008(CLP) 위험문구 : 해당없음
 - EC 1272/2008(CLP) 안전(예방조치) 문구 : 해당없음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za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미국 관리 정보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국제협약 정보
 - 로테르담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규제되지 않음
- 기타 규제
 - 미국관리정보 : Section 8(b) Inventory (TSCA): 존재함 [XU] (ACTIVE)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존재함
 - 호주관리정보 :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 (AIIC): 존재함
 - 뉴질랜드관리정보 : Inventory of Chemicals (NZIoC): 군 기준에 의해 포함되는 제품 내 구성성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의 화학물질로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음
 - 중국관리정보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존재함[38839]
 - 일본관리정보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존재함[(7)-877]
 - 필리핀관리정보 :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존재함
 - 대만관리정보 : Taiwan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TCSI): 존재함

<에틸 아세테이트>

-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
 - EC 1272/2008(CLP) 확정 분류 결과 : Flam. Liq. 2, Eye Irrit. 2, STOT SE 3
 - EC 1272/2008(CLP) 위험문구 : H225, H319, H336
 - EC 1272/2008(CLP) 안전(예방조치) 문구 : P233, P210, P240, P241, P242, P243, P271, P280, P261, P264, P312, P304+P340, P305+P351+P338, P337+P313, P303+P361+P353, P370+P378, P403+P233, P405, P403+P235, P501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za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 규제됨 (Use restricted. See item 75.)
- 미국 관리 정보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5,000 lb final RQ, 2,270 kg final RQ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국제협약 정보
 - 로테르담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규제되지 않음
- 기타 규제
 - 미국관리정보 : Section 8(b) Inventory (TSCA): 존재함 (ACTIVE)

- 유럽관리정보 :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EINECS): 존재함 [205-500-4]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존재함
- 호주관리정보 :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 (AIIC): 존재함
- 뉴질랜드관리정보 : Inventory of Chemicals (NZIoC): 존재함 [HSNO Approval: HSR001041]
- 중국관리정보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존재함[39342]
- 일본관리정보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존재함[(2)-726]
- 필리핀관리정보 :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존재함
- 대만관리정보 : Taiwan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TCSI): 존재함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
 - EC 1272/2008(CLP) 확정 분류 결과 : Acute Tox. 2, Skin Irrit. 2, Eye Irrit. 2, Resp. Sens. 1, Skin Sens. 1, Carc. 2, STOT SE 3, Aquatic Chronic 3
 - EC 1272/2008(CLP) 위험문구 : H351, H330, H319, H335, H315, H334, H317, H412
 - EC 1272/2008(CLP) 안전(예방조치) 문구 : P271, P272, P280, P284, P260, P264, P201, P202, P273, P308+P313, P304+P340, P310, P320, P305+P351+P338, P342+P311, P337+P313, P302+P352, P362+P364, P333+P313, P403+P233, P405, P501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zation list) : 규제됨(Reason for inclusion: Carcinogen Category 2 according to Regulation (EC) 1272/2008 classification criteria; Possible human carcinogen according to IARC criteria; Sensitizer EC: 247-722-4)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 규제됨(Use restricted. See item 75.)
- 미국 관리 정보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규제됨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100 lb final RQ; 45.4 kg final RQ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0.1 % 최소 허용농도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혼합 이성질체)로 등재)
- 국제협약 정보
 - 로테르담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규제되지 않음

- 기타 규제
 - 미국관리정보 : Section8(b)Inventory(TSCA) : 존재함 [SP] (ACTIVE)
 - 유럽관리정보 :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EINECS) : 존재함[247-722-4]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DSL) : 존재함
 - 뉴질랜드관리정보 : 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NZIoC) : 존재함 [HSNO Approval: HSR003307]
 - 호주관리정보 : Australia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AIIC) : 존재함
 - 중국관리정보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IECSC) : 존재함 [11919]
 - 일본관리정보 : Inventory - Japan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 존재함 [(3)-2214]
 - 필리핀관리정보 :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PICCS) : 존재함
 - 대만관리정보 : Taiwan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TCSI) : 존재함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TSCA; http://iaspub.epa.gov/sor_internet/registry/substreg/searchandretrieve/searchbylist/search.do
- EU Regulation 1272/2008
- TOMES;LOLI ; <http://csi.micromedex.com/fraMain.asp?Mnu=0>
-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17th
-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http://monographs.iarc.fr>
- ECHA CHEM; <http://echa.europa.eu/web/guest/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 ECHA, 1: 에틸 아세테이트/registration-dossier
- ECHA, 2: 틀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registration-dossier
- OECD SIDS; <http://webnet.oecd.org/>
- HSDB; <https://pubchem.ncbi.nlm.nih.gov/>
- EPA; <http://www.epa.gov/iris>
- EPISUITE Program ver.4.1
- NIOSH(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http://ncis.nier.go.kr/ncis/>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 국민안전처-국가위험물질정보시스템; <http://hazmat.mpss.kfi.or.kr/index.do>
- 화평법 등록서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Diisocyanatomethylbenzene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나. 최초 작성일자 : 2017년 05월 29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개정횟수 : 18회
- 최종 개정일자 : 2023년 10월 23일

라. 기타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의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 자료를 근거하여 기술하였습니다.
- 이 MSDS는 구매자, 취급자 또는 제 3자의 물질안전취급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으므로 특수한 목적의 적합성이나 다른 물질과 병용하여 사용, 상업적 적용이나 표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질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 MSDS에 포함된 내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 및 취급자는 정부 및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